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환경피해 분쟁조정사례>

(주)○○화학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

1. 사건의 개요

<사건 요지 >

전남 여수시 해산동에서 유자나무 등 5종의 과수를 경작하는 정○○가 여수시 화치동 소재 (주)○○화학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과수가 말라죽고 부실하다며 '92 ~ '97년 기간동안의 추가 배상금 36,000천원과 '98 ~ 2009년까지의 예상 피해 배상금 72,000천원, 총 108,000천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가.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신청인 과수원의 유자, 감, 모과 등의 과수나무에 피해를 주어 과수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며, 향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것인바, 이에 따른 과수 수확 감소량 피해와 향후 과수피해를 이유로 108,000,000 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여천산단 주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협의회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업단지 대기오염 영향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보상은 곤란하며, 신청인 피해내역중 과거분('91~'97)의 피해보상금은 이미 수령하였고, 장래 피해예상액('98~2009)은 여천 산단이 "대기오염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기환경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예상피해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2. 사실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의 주변입지는 정○○ 소유인 해산동 과수원이 피신청인 (주)○○화학 공장에서 보면 남쪽, 남동쪽(S·SE) 방향으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수원 남쪽 방향으로 40~50m 지점에 순천-여수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대형 수송 토과차량이 많았으

며, 과수원은 밤나무를 제외한 유자나무, 모과나무 등은 신청인 주택 바로 옆에 접하여 있고, 밤나무는 마을 뒤편(공장쪽) 야산에 식재되어 있었다.

나. 피신청인의 대기오염물질 현황

-피신청인 공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수준은 환경관련 지도점검 기관인 여수환경출장소에서 조사한 최근 검사오염도를 보면 '96. 7. 16일부터 '98. 12. 24일까지 아황산가스, 먼지, 염화수소, 벤젠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대기시료를 검체하여 측정하였으나,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으며, 오염물질을 최대한 배출시키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25.2ppm(기준 : 270ppm, '98. 5. 8일 조사), 먼지 오염도는 11.6mg/Sm³(기준 : 50mg/Sm³, '98. 5. 8일 조사)으로 배출허용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배출하였다.

환경판례

3. 인과관계

(1) 대기오염에 의한 과수피해 검토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여천지역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92~'97년 기간동안 아황산가스(SO₂), 총먼지(TSP)는 환경기준 이내이나, 오존(O₃) 오염도는 단기기준을 '97년 41회, '98년 9회 초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주변지역에서의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98년도에 대조지역(여천시내)에서의 오염도 보다 톨루엔, 스타이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신청인 과수원의 경우 이들 물질이 피신청인 공장 등 공단에서 배출한 아황산가스 등과 혼합하여 과수피해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의 주변지역에는 비슷한 업종의 ○○종합화학(주) 등 70여개의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확산되어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한 아황산가스, 먼지, 염화수소 등의 오염물질과 혼합하여 신청인의 과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되며, '98. 9. 18일 현장조사시 식물체 잎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함량이 대조지역(순천)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인접한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 물질과 혼합하여 신청인 과수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질병에 의한 과수피해 검토

- 공단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9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뭇거뭇한 반점 증상은 흑점병·소흑점병 또는 탄저병으로 판명되었고, '98년 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과실의 검은 반점은 검은무늬병으로 볼 때 질병에 의한 과수피해는 컷음이 인정된다. 다만, 질병에 의한 과수피해 정도가 관리부실과 대기오염에 기인하여 더욱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과수재배 관리부실에 의한 피해검토

- '78년부터 ○○공단협의회에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농작물 피해배상을 하였으며, 특히 '90년초부터 신청인이 과수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초·시비등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과수를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며, 이는 전문가 현장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예상피해 신청의 타당성 검토

- 과수의 경우 감수원인은 매년 기상, 토양, 병충해 등과 재배관리요인 등에 따라 변화가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원예 전문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경제수령이 긴 감귤류는 경제수령이 20~30년이고, 신청인의 유자나무의 경우 식재시점이 30년이 지나 정상적으로 관리하였을 경우 '80년대 말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90년 대말 부터는 경제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과수원은 '91년 피해배상을 위한 피해사실 조사시에도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98년 현장조사시에도 계속해서 방치되었으므로 경제수명은 훨씬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이 과수는 자연적인 요건과 인위적인 요건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당해연도 수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한 기상조건 등을 예측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재배관리와 피신청인과 그 주변 공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삭감량을 예상할 수 없어 과수의 예상피해금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여기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해배상액 산정

(1) 배상액 산정기간

- 피해배상 인정기간은 피신청인이 70년대말부터 수령한 보상금이 적다고 하여 그 이상의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1995년에 장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있어,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신청일('98. 6. 3)로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95. 6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하고, '95. 7월부터 '98년 6월까지 피해기간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2) 배상액 산정기준

-배상액 산정기준은 농촌진흥청의 "년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와 ○○공단 환경협의회에서 매년 실시되는 "○○공업단지 대기오염영향평가 연구보고서"의 공해감수율 등 각종 자료를 기준으로 인용한다.

산정식 : 소득액 × 공해로 인한 감수율 × 공장기여율

※ 소득액 = 면적당 조수의 - 표준경영비

(3) 배상액 종합(1,017,000)

-신청인의 과수피해는 여천산단 전 공장에서 아황산가스 등 여러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로써 그 배상액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산업단지 전 공장이 공동불법 행위 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과수피해 인정기간 동안 산업단지로 인한 신청인 과수피해의 전액 중 그간의 수령한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 배상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다른 공장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기여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종합한 피해배상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95		'96		'97		계		추가 배상액 (A-B)
	주정 배상액	수령액	주정 배상액	수령액	주정 배상액	수령액	주정 배상액	수령액	
유시	209,218	16,000	188,635	18,100	126,814	14,600	524,667	48,700	330,187
김	44,353	5,400	22,795	5,600	33,344	4,600	100,492	15,600	63,932
모과	15,960	1,900	32,480	2,900	26,400	2,200	74,840	7,000	64,710
비파	49,560	5,900	62,720	5,600	54,000	4,500	166,280	16,000	131,595
밤	-	-	-	12,500	121,200	10,100	261,200	22,600	231,800
계	319,091	29,200	446,630	44,700	361,758	36,020	1,127,479	109,900	1,017,000(579원 절사)

5. 재정결과에 대한 당사자 승복여부

- 승복